

의안번호	2206722
의 퇴 인	서미화 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계번호	24C607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	(제2호) 만 6세 이상인 사람.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 규정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은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장애인,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질 수 있음

- 2024년 기준 활동지원급여(월한도액 최고 7,754,000원[1구간])와 노인장기요양급여(월한도액 최고 2,069,900원[1등급]) 간의 급여량 편차가 나타남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되는 신청 대상 중 실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사람의 수와 급여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¹⁾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을 만 65세 이상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경우, 실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사람의 수를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

-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42.5만명이고, 그중 월평균 1,185명이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 경험이 있어 해당연도에 장애인활동급여를 수급함

- 또한,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대상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와 급여량을 추정하기 어려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있고 활동지원등급(1~15구간 및 특례구간)에 따라 월 한도액이 차등 설정됨

□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급여 간의 이동 규모 및 지원액 등을 현 시점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개정안의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원회(2023.2.14.)에서 논의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재정 추계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 또는 장애 출현시기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한다면, 이는 사실상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견지함. 즉,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과반(약 54%)임을 고려할 때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만큼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지원에 투입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의 최소 2배 이상(고령장애인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급여시간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